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

강 영 기*

- I. 들어가며
- II. 한국의 상법상 유한회사제도의 개관
- III. 독일 유한회사 제도의 개관
- IV.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의 개관
- V. 일본의 합동회사 자금조달 관련 제도 이용현황
- VI. 맺으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 상법상의 유한회사제도의 개요 및 독일 유한회사제도의 내용과 일본의 구 유한회사제도와 현행 합동회사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현 정부가 사채발행의 가능성을 포함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의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가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한회사제도를 이용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한회사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한회사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미국의 LLC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합동회사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유한회사의 사회적 신용도가 주식회사

* 고려대 금융법센터 연구교수, 법학박사.

와는 달리 지나치게 낮아서 자금조달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유한회사제도의 활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금조달기능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상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사채발행금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사채발행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자금조달기능의 개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채발행의 허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채발행의 허용조항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이에 필요한 법리의 검토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허용 필요성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채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종래의 법리를 무시하고 이를 수정하더라도 사채발행을 허용하는 입법필요성에 관한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허용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핵심어** 간이성(簡易性), 기업보조금(지원금), 사채발행 금지, 소액자본, 소수사모채(少數私募債), 소액자본, 유한책임의 특색, 자금조달 활성화, 콘센서스, 합동회사

I. 들어가며

최근에 정부가 사채발행의 가능성을 포함한 유한회사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규제 완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있었다.¹⁾ 2019년 6월에 법무부가 「상법상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본다. 이처럼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

유한회사 제도는 우리 상법(회사편)에 규정된 대표적인 회사형태의 하나이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용률이 높지 않다. 실제로 2019년 12월 27일 등록된 국세청의

1) 윤경환, “유한회사 자금규제 확 풀어 벤처 키운다”, 『서울경제』 (2019. 6. 10.), 31면.

국세통계 설명자료 중 2018년도 법인종류별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법인 총 수 740,215 중 주식회사(Stock Company) 702,998개사,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33,169개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3,164개사,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884개사로 나타난다.²⁾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시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의 대상도 아니며, 구조적으로 주식회사와 거의 같지만 훨씬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인적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유한회사는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모델로 하여 일본이 1938년 유한회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내용을 그대로 상법에 받아들인 이후 지금의 상법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제543조~613조)에 규정되어 법인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데, 유한회사제도 이용이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본이 1938년에 독일의 제도를 참고로 도입할 당시,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는 「한편으로 주식회사처럼 사원의 책임이 유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합명·합자회사처럼 사원 간의 관계가 긴밀하여 법률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회사의 형태로서 도입되었다」³⁾는 표현에서 보듯이, 경영정보의 공개처럼 주식회사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의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중간적 특징을 가진 형태로서 잘 활용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만한 제도라고 본다. 실제로 독일의 유한회사나 미국의 LLC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2006년 회사법 제정으로 유한회사제도가 사라진 일본의 경우에는 유한회사를 대체하여 도입된 합동회사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유한회사제도가 널리 보급된 상사회사의 하나로써 통계상으로 볼 때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형태이며⁴⁾, 독일에서는 회사형태 중 유한회사가 가장 많다.⁵⁾ 그

2) 국세청 통계자료실 <https://stats.nts.go.kr/data/data.asp#> 참조.

3)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有限会社法』[第4版], 有斐閣, 2005, 1頁.

4) ジャンクロード・アルアン(Jean-Claude Hallouin)(亀井克之訳), “フランスにおける一人有限会社(La

리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이 충분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세계3대 신용평가회사(무디스, S&P, Fitch) 중 하나인 S&P가 유한회사(LLC)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세계 최대 자동차부품업체인 Bosch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유한회사이다.⁶⁾ 이처럼 유한회사의 법인형태는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한국의 내국인이 기업을 창업할 때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기업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데서 오는 실무적 장애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데, 과연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요인이 자금조달의 기능에 있다면 어느 부분을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유한회사제도와 관련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사한 법제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실무적 운용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정리해보고 우리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와 법적으로 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 중에서도 합동회사의 자금조달 현황과 그에 관련된 제도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한국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의 자금조달기능의 활성화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SARL unipersonnelle en France)”, 関西大学法学研究所 第63回 特別研究会 「フランスにおける小規模会社」의 강연(2006. 9. 22. 개최), 45頁.

5)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ドイツにおける現地法人(GmbH)設立の手引き」, 2016年 1月, 3頁.

6) 로베르트 보쉬(Robert Bosch GmbH)는 자동차 및 산업기술, 소비재 및 빌딩 기술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1886년 독일의 로베르트 보쉬에 의해 정밀기계와 전기기계 제조업체로서 설립되어 1917년에 주식회사가 되었으나 1937년 이래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참조.

II. 한국의 상법상 유한회사제도의 개관

1. 유한회사의 설립과 등기

지분의 형태로 사원이 출자한 자본을 가지고 설립·운영되며, 모든 사원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한 유한의 책임만을 부담하고(상법 제553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직접 부담하지 않는 회사의 형태가 유한회사이다.⁷⁾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인 이상의 사원이 회사의 설립목적 및 회사의 상호, 자본금의 총액 등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상법 제543조), 정관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때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상법 제547조), 신청자인 유한회사의 대표자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게 된다(상법 제172조, 제549조). 그리고 유한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상업등기법 제23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인허가 대상인 때에는 필요한 서류와 승인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과밀억제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참조).

2. 유한회사의 운영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한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데(상법 제554조), 정

7) 정찬형, 『상법강의(상)(제21판)』, 박영사, 2018, 1315면.

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상법 제556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559조).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법령이나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⁸⁾

한편, 유한회사의 사원이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이 되는데(상법 제548조), 유한회사에서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600조, 제604조 참조), 장기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한 다음에 자본금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상법 제584조, 제585조). 이때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지점소재지는 3주 이내)에서 자본금 증가와 관련된 변경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43조, 제584조, 제585조).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변경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상법 제584조, 제585조). 여기서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총사원의 의결권 4분의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3. 유한회사 형태가 적은 이유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유한회사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흔히 지적되는 법규정 내용의 경직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⁹⁾, 무엇보다도 거래상대방이 주식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비교적 법인설립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에 선호될 것 같지만, 추가적인 투자유치와 자금조달

8) 정찬형, 위의 책(주 7), 1326면.

9) 원칙적으로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고(상법 556조), 지분에 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의 발행이 금지되며(상법 555조), 사원의 공모가 금지되고 사채의 발행이 금지되는 등 제약이 있다.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701면.

이 어려운 점도 있고, 장점으로 거론되는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이 유한회사의 사회적인 평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유한회사형태의 이용이 저조한데, 적어도 투자유치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면 유한회사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한편, 자산유동화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자산유동화법 제17조), 이처럼 제도적으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강제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한국현지법인이 유한회사형태를 취하는 경우 이외에도 내국법인에 의한 유한회사형태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독일 유한회사 제도의 개관

1. 독일 유한회사의 기관구성

독일의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GmbH)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독일의 입법자가 1892년 4월 20일에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유한책임회사법)(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이라는 명칭의 입법을 하고 동년 5월 19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경제생활에 적용하면서 인정된 회사 유형이다.¹⁰⁾ 이는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 사원(Gesellschafter)만으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주 유한책임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단순화하고, 번잡한 규정

10) 今野裕之, “ドイツ「有限責任会社」制度の立法過程—ドイツ帝国議會議事録および政府草案・理由書を中心として”, 成城法学 第19号, 1985, 100頁.

을 간편하게 하여(독일 유한회사법 제1조 이하)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 인격을 가진 회사의 형태이다.¹¹⁾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Gesellschafterversammlung)와 이사(Geschäftsführer)의 2가지가 필요기관이고, 감사회(Aufsichtsrat)는 필요적 기관은 아니지만 정관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독일 유한회사법 제52조).¹²⁾ 유한회사의 기관에는 상하관계가 있고 사원총회가 의사결정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독일 유한회사법 제45조).¹³⁾ 독일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하는 기관이지만(독일 유한회사법 제35조), 독일 주식회사의 이사와는 달리 자기의 책임 하에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원총회의 지시에 따르면서 업무를 집행하며(독일 유한회사법 제37조1항),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 범위 내의 활동에 대해서 경영책임을 부담한다.¹⁴⁾

독일 유한회사법은 사원총회에 기관구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정관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므로, 정관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감사회(Aufsichtsrat), 사원위원회(Gesellschafterausschuss), 임원회(Verwaltungsrat), 고문회(Beirat) 등을 사원총회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¹⁵⁾ 그리고 기관구성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감사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500명의 넘는 종업원을 가진 유한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해야 하고 감사의 3분1은 종업원이어야만 한다는 제약이 있다(종업원의 감사회 참가에 관한 법률(Drittelbeteiligungsgesetz) 제4조).¹⁶⁾

11)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앞의 논문(주 5), 3頁; 2015년 현재 독일 상업등기부상 등록된 1,156,434개사 중 유한회사(GmbH)가 1,051,093개사, UG(haftungsbeschränkt)가 105,341개사, 주식회사(AG)가 15,716개사, 합자회사(KG)가 254,013개사, 합명회사(OHG)가 24,534개사였다고 한다.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欧州法務事情シリーズ 第1回 ドイツ有限会社(前編)”, KPMG Insight vol.17, 2016, 4頁.

12)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4頁.

13)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4頁.

14)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5頁.

15)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5頁.

2. 독일에 유한회사가 많은 이유

다른 회사형태가 오랜 기원을 가지는 것과 달리 1892년 유한책임회사법의 입법에 의해 탄생한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간편한 형태의 주식회사를 상정하고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성공적인 운영을 보이자 유럽 전체로 전파되고 많은 나라에서 유한회사에 상응하는 회사형태들이 등장하였다고 한다.¹⁷⁾ 독일에서는 지금도 유한회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유한회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유한회사의 특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 ① 범용성: 기본적으로 적법하다면 어떠한 목적(영리·공공공익 등)으로든 설립이 가능하다.
- ② 유한책임성: 유한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된다. 즉, 사원은 인수금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재산만이 담보가 된다.
- ③ 간이성(簡易性):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요건이 간소화되어 있다. 또한 2008년 유한회사법이 대폭 개정된 MoMiG¹⁹⁾에 의해 회사목적이 행정법상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의 제출이 더 이상 등기조건이 아니게 되고, 등기법원의 심리권이 제한되므로 회사의 등기기간도 단축된다. 그리고 MoMiG에 의해 사원3명이 GmbH를 현금출자로 설립하고 이사(Geschäftsführer)를 1명만 임명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법에 첨부된 설립서류(설립 및 이사 임명결의서, 정관, 사원명부, 등기신청서 등의 샘플)를

16)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5頁.

17)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앞의 논문(주 5), 3頁.

18) 독일에 유한회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 정리한 이하의 내용은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위의 논문(주 5), 4-5頁 참조.

19) MoMiG는 「MoMiG(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GmbH-Rechts und zur Bekämpfung von Missbräuchen)/유한회사법의 근대화 및 악용방지를 위한 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회사설립의 신속간이화를 통해 GmbH의 매력을 높이고 영국의 Ltd와 같은 외국의 회사형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위의 논문(주 5), 2頁.

이용하므로 설립절차가 간단해지고 비용도 절감된다.

- ④ 가변성(유연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기관의 임무, 운영방법 등을 자유로이 결정한다.
- ⑤ 1인회사의 가능성: 사원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 ⑥ 비공개성(非公開性):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지분 양도는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하며,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가능성과 비공개성에 의해 유한회사는 자회사의 형태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⑦ 감사회가 불필요: 일정 규모를 넘지 않으면 감사회(Aufsichtsrat)를 두지 않아도 되는 점이 사원과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점이다.
- ⑧ 소액자본으로 충분: 적어도 5만 유로의 기초자본금이 필요한 주식회사와는 달리 25,000유로의 기본자본금이면 설립에 충분하다.
- ⑨ 이미지 및 신용: 독일에서도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보다 신용이 높지만, 독일에서는 기업가가 개별 기업의 내용과 규모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식회사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장점이 많은 유한회사를 설립한 결과, 많은 우량기업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신용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할 목적이 아니라면 법적인 장벽이 높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본다.

3. 유한회사의 자본금 관련 내용

유한회사의 기본자본금은 최저자본금으로서 25,000유로가 필요하며, 자본금최저액을 하회하는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는 유한회사가 될 수 없고, 상호에 「기업자회

사(유한책임)」를 의미하는 「Unternehmergesellschaft(haftungsbeschränkt)」 혹은 「UG(haftungsbeschränkt)」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²⁰⁾ 법인인 유한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회사재산뿐이고 회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원의 개인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직접책임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한회사에서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투시책임(Durchgriffshaftung)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²¹⁾ 즉,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만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가 되며, 기본자본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주의할 사항은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수요와 과소자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²²⁾ 그리고 각 사원 지분의 액면 최저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유로로 표시되어야 하고 1유로 이하의 지분 액면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총지분의 액면 총액이 기본출자와 일치하여야 한다.²³⁾

정관의 공증을 받은 후에 설립중의 회사는 독일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통상적인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설립등기 신청 전에 그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독일 유한회사법 제7조 2항). 이때 기본출자금의 4분의1 또는 최저자본금액의 절반(12,500유로)을 납입한 후에 이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납입된 금액이 “자신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²⁴⁾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은 출자의무로 한정되고,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에 상당하는 회사재산이 유지되고 이것이 사원에게 환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만들어져 있다.²⁵⁾ 첫째로, 자본금은 인수가 완료된 자본금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채무항목에서

20) Maximilian Gröning 小林あき, 앞의 논문(주 11), 6頁.

21) 과소자본을 요건사실로 한 일반적 책임은 없고, 양속(良俗)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독일 민법 제826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Baumbach/Hueck/Fastrich, §5 Rn 6 참조; Maximilian Gröning 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6頁.

22) Maximilian Gröning 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7頁.

23) Maximilian Gröning 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7頁.

24) Maximilian Gröning 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11), 8頁.

증명되어야 하고(독일 유한회사법 제42조1항, 독일 상법 제266조3항, 제272조), 둘째로, 자본금의 유지에 필요한 회사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원에게 환급해서는 아니 되며(독일 유한회사법 제30조~제32조), 셋째로, 회사는 자기지분을 자본금액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이 회사에 유지되는 한도에 있어서만, 취득할 수 있다(독일 유한회사법 제33조). 만일 자본유지규제에 위반하여 회사재산이 사원에게 환급되고, 환급 받은 사원이 위법하게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들이 그 지분에 따라 위법한 지출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독일 유한회사법 제31조3항).²⁶⁾

한편 독일 유한회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에 의한 '통상적인 자본증가'(독일 유한회사법 제55조~제57a조), 준비금의 자본금 편입을 통한 '명목상의 자본증가'(유한회사법 제57c조), 수권자본의 형태를 통한 자본증가(독일 유한회사법 제55a조)의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출자에 의한 '통상적인 자본증가'는 이하의 5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²⁷⁾ ①자본금액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독일 유한회사법 제3조1항3호) 그 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4분의3 이상의 다수결을 통한 정관변경의 결의가 필요하고(독일 유한회사법 제53조) 자본증가결의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며(유한회사법 제53조2항1문 전단), ②자본증가에 따른 지분인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총회의 과반수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고(독일 유한회사법 제55조2항), ③지분을 인수할 자와 회사와의 사이에 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되어(독일 유한회사법 제55조1항), ④지분의 인수인에 의한 출자행이 이루어진다. ⑤자본증가가 있으면 상업등기부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독일 유한회사법 제57조1항), 자본증가의 등기가 있어야 자본증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독일 유한회사법 제54조3항).

25)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欧州法務事情シリーズ 第1回 ドイツ有限会社(後編)”, KPMG Insight vol.18, 2016, 5頁.

26)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25), 5頁.

27)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위의 논문(주 25), 6頁.

IV.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의 개관

1. 유한회사의 폐지와 합동회사의 도입

(1) (구)유한회사 제도의 개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이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가증권(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유한회사는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가 주로 취하던 회사의 형태이다. 그러나 2006년에 유한회사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회사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는 없다. 여하튼 유한회사는 회사성립 후에 기업규모 확대나 손실의 보충을 위해 사내유보의 이용 이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달방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경영자가 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가 회사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면 세제상으로 이자가 회사의 손실액이 되거나 회사가 도산한 때의 회수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의 유지가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신주를 발행하면 되지만, 유한회사에서는 정관의 변경을 통한 자본의 증가가 필요하다(유한회사법 제47조~제57조).²⁸⁾

1)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결정

유한회사의 자본 총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유한회사법 6조1항 3호) 자본증가에는 정관의 변경 즉,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였다(유한회사법 47조, 48조). 자본증가 시에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 해당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것이 법률

28) 江頭憲治郎, 앞의 책(주 3), 571頁.

상 요구되어 있지는 않았다.²⁹⁾

2) 자본증가의 결의사항

자본증가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①증가 후의 자본총액 ②자본증가의 방법 ③불입금액 ④변태증자사항 ⑤사원의 출자인수권의 배제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증가할 수 있는 자본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고, 자본증가로 각 사원의 출자 구좌 수(유한회사법 제6조1항6호)가 변동하더라도 회사성립 후의 변동은 정관변경 사항이 아니다. ②자본증가의 방법과 관련하여 출자 1구좌의 금액(유한회사법 제6조1항4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자본증가로 그것이 변경되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지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자본증가시에 어느 지분이 증가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사원이 출자인수권을 가지는 신출자에 관해서는 1구좌 당 출자1구좌의 금액(유한회사법 제6조1항4호)과 같은 액수의 불입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특별히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해야 할 의미는 적다. 그러나 다른 자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납입금액의 결정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금액을 결정할 의미는 크다. 납입기일에도 일정한 효력이 연계되어 있으므로(유한회사법 제52조의2)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 ④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 및 부여할 출자구좌 수, 그리고 자본증가 후에 양수를 약속한 재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을 정할 수 있다(유한회사법 제49조1호·2호).³⁰⁾ ⑤유한회사의 사원은 법률상 증가하는 자본에 대해 자기지분에 비례하여 출자의 인수를 하는 출자인수권을 가진다(유한회사법 제51조 본문). 그 출자인수권을 배제하고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출자인수권이 부여될 자 및 그 권리내용(출자구좌

29) 江頭憲治郎, 위의 책(주 3), 596頁.

30) 江頭憲治郎, 위의 책(주 3), 597頁.

수, 불입금액, 지분내용 등)을 정할 것인지(유한회사법 제49조3호)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해 장래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출자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약속하고 그에 대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유한회사법 제50조)를 얻을 것이 필요하다(유한회사법 제51조 단서).³¹⁾

3) 유한회사의 사채발행 금지

유한회사는 비공개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채의 발행이 금지되었는데³²⁾, 유한회사법 제59조4항, 제60조1항 단서, 제63조의3제3항, 제63조의7제4항, 제64조1항 단서는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었다.³³⁾

(2) 합동회사의 설립취지³⁴⁾

일본에서도 2006년 4월 30일까지는 상법 제2편의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유한회사법상의 유한회사를 포함하여 4종류의 회사형태였는데, 현재 회사법상으로는 종래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통합한 주식회사와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합동회사를 포함한 지분회사의 2종류 회사유형이 존재한다. 합동회사는 2006년 회사법개정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새로운 회사형태로서 이전에는 없던 존재였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명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본래 합동회사는 미국의 각 주법에서 인정되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기에 일본판 LLC라고 부르며, 법인명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 ‘~LLC’로 사용할 수 있다. 합동회사의 모든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하지만 출자와 경영이 주주와 이사로

31) 江頭憲治郎, 위의 책(주 3), 598頁.

32) 奥野健一ほか, 『有限会社法積義』, 巖松堂, 1941, 99頁.

33) 江頭憲治郎, 앞의 책(주 3), 578頁.

34) 합동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 참조.

<https://ja.wikipedia.org/wiki/%E5%90%88%E5%90%8C%E4%BC%9A%E7%A4%BE>

분리되어 의사결정기관이 사안별로 다른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와 경영이 일체인 지분회사는 내부관계 및 의사결정 절차의 설계가 단순한데, 합동회사는 사원 전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신규설립이 인정되지 않게 된 유한회사 대신에 소규모 사업의 법인화에 주로 이용되는 회사형태가 되었다. 회사법의 시행으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고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법인화 하는 경우의 장벽이 낮아졌지만 법인등기비용 등 설립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측면에서 합동회사의 장점이 있다. 회사법 제정에 관한 법제심의회 의사록에 의하면 합동회사라는 명칭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종전부터 이용되던 합명·합자 등의 ‘합’을 이용하기 위해 선정된 명칭일 뿐, 출자자인 사원이 1명인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하다.

신 회사법 시행 1년 후 약5000개 합동회사가 설립(합자회사는 1년에 약1600개, 합명회사는 약100개)되었고, 차츰 그 수가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약19800개(주식회사는 약86000개) 합동회사가 설립(2014년도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약39400개사 존재)되었는데, 개인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등 다양한 규모의 공동사업과 자회사 사업, 벤처사업 등이 합동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외국기업의 일본현지법인에 많고, 주식회사에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합동회사는 지분회사로서 서로 인적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유형이라는 점에서 합명·합자회사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즉, 회사내부관계의 규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자치가 인정되며 설계가 자유롭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과 같은 기관은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전체 사원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회사법 제590조1항),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과 회사대표사원을 정할 수도 있다. 정관의 작성변경에는 전체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회사법 제575조, 637조) 사원의 지분 양도나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도 다른 사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다(회사법 제585조, 604조2항). 이익분배와 의결권배분은 출자비율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인정된다. 한편, 합동회사에 고유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원은 모두 유한책임사원이고(회사법 제

576조 4항) 간접유한책임만을 진다(회사법 제580조 2항. 주식회사 및 (구)유한회사와 같다). 각 사원은 출자의무를 지는데 신용 및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등기 시까지 전액 불입하여야 한다(회사법 제578조. 주식회사와 (구)유한회사도 같다). 지분의 환급은 청구할 수 없고 퇴사시의 환급은 규제된다(회사법 제632조. 주식회사 및 (구)유한회사도 같다). 합명·합자회사와 달리 무한책임사원이 없고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회사법 제668조 참조). 이러한 지분회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보면, 합동회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이고, 합동회사 고유의 특징에 비추어보면, 주식회사의 특징을 반영한 회사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유한회사 중에서 폐쇄성이 높은 것은 합동회사로 하고, 폐쇄성이 낮은 것은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회사법의 취지로 보인다.

(3) 유한회사와 합동회사의 비교

2006년 법개정으로 일본에서 유한회사를 새로 설립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현재 유한회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는 그 이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유한회사로 표기하고 있는 기업을 ‘특례유한회사’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한편, 유한회사의 불리한 점은 조직이 작고 이사의 임기가 없어서 독단적 경영이나 동족경영이 되기 쉽다는 점과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신용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유한회사는 일본의 기업풍토에 적합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활용된 경우는 적은 편이다. ‘유한(有限)’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채용한 기업이 많았는데, 그러한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상으로도 주주총회 기타 법정규정을 무시하는 소규모회사를 어느 정도 용인하여 주식회사

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법특례법)에서 소(小)회사를 인정하였으므로 소규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는 설립시의 최저자본금 정도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유한회사의 독자적인 의의는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회사법 제정 시에 유한회사제도는 폐지된다. 현존하는 유한회사는 회사 전체의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로 변경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유한회사로서 상호 안에 유한회사의 문자를 남겨야 하고 주식회사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등 각종 특례조치가 적용된다(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등).³⁵⁾

회사법이 제정되고 유한회사를 새로이 설립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 것이 합동회사(LLC)인데, 구미(歐美)에서 주식회사와 거의 동등하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구미(歐美)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연간 2만 건 가까운 합동회사가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신규설립 약 8만 6천 건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영리기업인 법인이며, 1인이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도 1엔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설립 시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도 저렴하여 낮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법률에 의한 규제도 적으며(임원임기가 없고, 기관구성도 간소하며, 정관자치의 범위가 넓은 등) 자유로운 회사운영을 원하는 기업가에게 적합하다. 설립비용은 주식회사의 경우 약 25~30만 엔 정도 필요하지만, 합동회사의 경우는 약 10~12만 엔 정도가 소요된다.³⁶⁾

여기서 유한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자. 본래 유한회사는 설립시의 자본금이 300만 엔 이상, 설립시의 사원 1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였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이 1000만 엔 이상 필요하여 부담이

35) 출처: 위키피디아 ‘有限会社’ 중 “有限会社制度廃止への経緯”

<https://ja.m.wikipedia.org/wiki/%E6%9C%89%E9%99%90%E4%BC%9A%E7%A4%BE>

36) 合同会社設立.net, “合同会社(LLC)とは”, 行政書士法人MOYORIC(モヨリック)

https://www.llc-kobe.net/about_llc/

되었기에 유한회사는 주로 가족경영이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만들 때 적합한 회사 형태였다. 그런데 최저자본금이 철폐되어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1엔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의 상호변경으로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에 승계될 때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회사가 많다고 한다.³⁷⁾ 그리고 유한회사의 특징으로서 임원의 임기가 없고 결산공고의무가 없으며, 상장(주식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드는데, 이것은 합동회사도 같다. 합동회사는 자본금 1엔 이상, 설립시의 사원 1명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자자가 경영자가 된다. 즉, 유한회사나 합동회사 모두 가족경영과 같이 적은 수의 인원(少人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임원의 임기가 없으며 결산공고의무가 없는 등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한회사에서는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監査役)’를 임의로 둘 수 있지만, 합동회사에서는 감사라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표 1] 유한회사와 합동회사의 비교

	유한회사	합동회사
자본금	300만 엔 이상	1엔 이상
임원의 수	이사 1명 이상	업무집행사원 1명 이상
대표자의 명칭	대표이사	대표사원
임원의 임기	없음	없음
감사(監査役)의 설치	임의로 설치 가능	둘 수 없음
상장(주식공개)	할 수 없음	할 수 없음
결산공고의무	없음	없음

2. 합동회사의 설립현황

법무국 통계를 보면 합동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도의 27,000건을

37) 合同会社設立.net, “合同会社と有限会社の違い”, 行政書士法人MOYORIC(モヨリック)
<https://www.llc-kobe.net/hikaku/yugen.html>

38) 合同会社設立.net, 위의 웹페이지(주 37).

넘는 합동회사의 설립은, 같은 해의 주식회사 설립건수 9만1천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로서 합동회사의 형태에 관심을 가진 경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⁹⁾

[표 2] 합동회사의 설립 수

연도	설립된 합동회사의 수
2006	3,392
2007	6,076
2008	5,413
2009	5,771
2010	7,153
2011	9,130
2012	10,889
2013	14,581
2014	19,808
2015	22,223
2016	23,787
2017	27,270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설립비용이 낮고 정관인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신속한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도 자유로운 편이며, 임기만료시마다 임원의 중임등기가 필요한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의 임기가 없으므로 합동회사 설립 후에 정관변경이나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는 한 법무국에서 추가로 밟아야 할 절차도 필요 없는 등 장점이 있어서 합동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⁴⁰⁾

39) 合同会社設立.net, “合同会社(LLC)設立件数の推移・統計”, 行政書士法人MOYORIC(モヨリック)
https://www.llc-kobe.net/seturitu_su/

40) 合同会社設立.net, 위의 웹페이지(주 39).

[표 2] 최근의 합동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현황 통계표

2019년	합동회사의 설립건수	주식회사의 설립건수
1월 설립	2,558	7,231
2월 설립	2,445	6,240
3월 설립	2,488	6,867
4월 설립	2,695	8,232
5월 설립	2,498	7,769
6월 설립	2,487	7,390
7월 설립	2,930	8,217

합동회사는 설립비용이 낮고 비교적 소규모 회사의 설립에 많이 이용되며, 절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허가에 법인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되는데, 대체로 인터넷 관련사업, 개호(介護)사업, 인터넷비즈니스, 공사건설업, 음식점 등 회사의 지명도와 상관없이 개인대상서비스를 전개하는 업종이 합동회사의 형태에 적합하다고 본다.⁴¹⁾ 합동회사로 하는 법인화의 이점은 크다. 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엄격한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그 법인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및 융자를 받기 쉬워진다. 개인사업과 달리 법인의 경우는 책임소재도 명확하기 때문에 신용이 높아진다. 합동회사는 개인사업보다도 신용이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생각하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것이 은행이나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융자를 받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금조달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뿐만 아니라 직접융자로서 '사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회사와 가까운 사람을 대상으로 출자를 모으는 「소수사모채(少數私募債)」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개인사업에서는 사업주가 사망한 때에 상속이 발생한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주명의로 은행계좌는 일시적으로 동결된다. 계좌가 동결되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던 경우에 지불이 지체된다. 개인사업은 어디까지나 개인명의 계좌통장밖에 없으므로 사망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41) 合同会社設立.net, “合同会社(LLC)の特徴・メリット”, 行政書士法人MOYORIC(モヨリック)
<https://www.llc-kobe.net/merit/>

많다. 한편, 법인화되면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으며, 계좌가 동결되는 일도 없고 대표자의 변경도 원활해진다. 상속대책에 있어서도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에게 상업을 승계하기 쉬워진다.⁴²⁾ 또한, 개인사업에서는 사업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액이 소득이 되고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법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임원급여도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법인은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원 급여는 급여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⁴³⁾

한편, 합동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용을 절감하여 합동회사로 설립을 하고 사업이 확대되면 주식회사로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절차적으로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 합동회사의 사업목적이나 임원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식회사로 이행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⁴⁴⁾

3. 합동회사의 자금조달 유형⁴⁵⁾

2006년 회사법에서 신설된 형태인 합동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설립이 용이한 반면, 주식회사 정도의 신용도는 없어서 자금조달이 어렵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합동회사형태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주식회사에 비하면 인지도나 신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방법은 있다. 물론 회사 규모의 확대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변제 또는 변제의 대가로 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이며, 차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42) 合同会社設立.net, “合同会社化(法人成り)のメリット”, 行政書士法人MOYORIC(モヨリック)
<https://www.llc-kobe.net/houjinka/>

43) 合同会社設立.net, 위의 웹페이지(주 42).

44) 合同会社設立.net, 위의 웹페이지(주 42).

45) 信用力に乏しい合同会社でも利用しやすい3つの資金調達方法에 대해서는
<https://kigyolog.com/article.php?id=262#1-1>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설립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용도로 이어지지만, 합동회사의 경우는 간단히 설립할 수 있어서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합동회사 중에는 규모도 크고 건전한 운영으로 신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합동회사의 신용도는 높지 않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합동회사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다. 사원의 출자를 받거나 새로운 사원의 영입을 통한 형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염두에 둔 방법은 대체로 (1)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2)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융자, (3)소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발행 등의 3가지로 압축된다.

(1)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은 주식회사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규모와 사업을 확대하고 신용도를 높인 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기사업으로서 융자를 해주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회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다.⁴⁶⁾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보조금이란 정부가 사기업이나 개인 등의 민간부문에 대하여 제공하는 일방적인 화폐의 급부를 가리킨다. 일본에서의 법령상 보조금의 정의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적정화법(補助金適正化法)도 명확한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정부에게 또는 하위정부가 상위 또는 동급의 정부에 대해 양자의 동의를 거쳐 이양하는 금전은 부담금(負担金)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급부금(給付金)이나 조성금(助成金) 등 명칭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보조금과 동등한 성격을 가진 것들은 법령의 지정으로 보조금적정화법의 대상이 되고

46) 뉴어아-kind센터, “【えっ!?そんな制度あるの?】国や地方自治体がやっている中小企業向け補助金・助成金のアレコレ”, 2016. 8. 1. https://new.akind.center/201608/small_businesses/

있다.

보조금에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는데, 일본국헌법 제89조에서 공금 기타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사용, 편익 또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적인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 교육 또는 박애의 사업에 대해, 이를 지출하거나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1)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등

국가의 보조금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補助金適正化法))에 의해 처리된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에 규정이 있다.

① 보조금 적정화법(補助金適正化法)⁴⁷⁾

보조금을 지불하는 자의 책무로서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은 관장하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등이 국민의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고, 보조금 등이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자는 보조금 등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 기타 귀중한 재원으로 지원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 목적 또는 간접 보조금 등의 교부 또는 융통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보조금적정화법 제3조1항2항). 보조금을 받은 자는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이에 부가된 조건 기타 법령에 따른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여야만 하며, 적어도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1조). 그리고 보조

47)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조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0AC0000000179

를 받은 자는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에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은 이 보고 등에 따라 그 자의 보조사업 등이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이에 부가된 조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에 대해 이들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해 해당 보조사업 등의 수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동법 제12조, 제13조1항·2항).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은 보조를 받은 자 등이 보조금 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기타 보조사업 등에 관해 보조금 등의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이에 부가된 조건 기타 법령 또는 이에 따른 각 정부부처(省庁)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사업 등의 해당 취소부분에 관하여, 이미 보조금 등이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1항). 또한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의 집행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서의 사용 또는 간접 보조금 등의 다른 용도에서의 사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한다(동법 제30조).

②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⁴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의 특정재원을 총칭하여 국고지출금이라 하고, 지방재정법은 이를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으로 분류한 다음에 국가의 책무, 금액의 산정시의 원칙 등을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교부금 등

①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⁴⁹⁾에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

48) 地方財政法 조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09

49) 地方自治法 조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067

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동법 제232조의2).”고 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진다. 지출에 대해서는 보조금적정화법의 규정에 준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요강 등에 따른다. 그리고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곳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등이 존재한다. 지원금액은 설비나 건물, 토지 등의 구입액의 몇%와 같이 결정되고 신청내용을 평가 후, 허가되면 지급된다. 평가에 있어서는 발주부터 납품, 청구서에 기초한 지불, 그 후의 영수까지 구입의 흐름 전체를 확인하고, 실제로 사업용에 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까지 이루어진다.

②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감사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대출금, 손실보상, 이자보충 기타 재정적 원조를 하는 경우의 출납 기타 사무의 집행에서 해당 재정적 원조에 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다. 해당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해당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불을 보증하고 있는 것, 해당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수익권을 가진 신탁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탁자 및 해당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제2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적 시설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99조 7항).

다음으로 지원금제도를 살펴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지원금 관련 제도로는 a. 지역창조적 기업보조금 b.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c. 경력 강화 지원금 등의 3가지가 있는데 그 개요를 보면 이하와 같다.

- a. 지역창조적 기업보조금⁵⁰⁾이란 새로운 수요와 고용 창출 등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새로 창업하는 자에게 창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50) 지역창조적 기업보조금에 대한 공식 웹사이트 www.cs-kigyoo.jp/

이것은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때 지역창조적 기업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8가지이다.

- ① 새롭게 창업하는 자일 것
- ②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이 아닐 것
- ③ 응모자가 개인인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일 것
- ④ 사업실시 완료일까지 계획한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해 종업원을 새로이 1명 이상 고용할 것
- ⑤ 산업경쟁력 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에 따른 인정 기초자치단체(認定市区町村)에서의 창업일 것
- ⑥ 산업경쟁력 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에 따른 인정 특정창업지원사업(認定特定創業支援事業)의 대상자일 것
- ⑦ 소송이나 법령준수상의 문제가 없는 자일 것
- ⑧ 응모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폭력단체 등의 반사회적 세력이 아닐 것’, ‘반사회적세력과의 관계가 없을 것’

특히 주의할 것은 ⑥산업경쟁력 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에 따른 인정 특정창업지원사업(認定特定創業支援事業)의 대상자일 것이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정 특정창업지원사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특정창업지원사업’의 인정을 받으면 창업에 관한 각종 제도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동회사의 창업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b. 소규모사업자 지속화 보조금이란 소규모사업자가 상공회·상공회의소(商工会·商工会議所)의 도움을 받아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판로개척(간판작성, 홈페이지 작성, 광고전단지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다.⁵¹⁾

51) 지속화보조금 채택기업 96%의 사업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의 홈페이지, 간판, 광고전단지의 작성 등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이 보조대상이며, 보조비율은 3분의2, 보조금액상한은 50만 엔이다.

- c. 경력 강화 지원금은 기간계약노동자, 단기간노동자,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기업 내에서의 경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사원화, 처우개선의 노력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⁵²⁾

기간계약노동자를 정규고용노동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정사원화 코스’, 기간계약노동자에 대해 정규고용노동자와 공통 직무에 따른 임금규정 등을 새로이 작성·적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임금규정 등 공통화 코스’ 등 회사가 실시하는 다양한 경력 강화 노력이 대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는 급여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활용할 만한 제도이다.

(2)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융자⁵³⁾

일본정책금융공고법(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⁵⁴⁾을 근거로 한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융자를 활용하는 것도 자금조달의 유효한 수단이다.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과는 달리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융자를 받는 것이 용이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

<https://www.chusho.meti.go.jp/koukai/yosan/2018/181221yosan09.pdf>

52) 경력 강화 지원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공식 웹사이트 참조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part_haken/jigyounushi/career.html

53) 株式会社日本政策金融公庫法 제1조(목적)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일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을 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면서 국민 일반, 중소기업자 및 농림수산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능을 담당함과 더불어 내외의 금융질서의 혼란 또는 대규모 재해, 테러리즘 또는 감염증 등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을 수행하고, 당해 필요한 금융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54)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조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9AC0000000057&openerCode=1

庫)의 용자제도 중에서 유명한 것이 ‘신창업용자제도(新創業融資制度)’⁵⁵⁾인데, 이는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자 또는 사업개시 후 행한 세무신고가 2기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명칭은 새로운 창업이지만 창업 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창업용자제도’에는 ‘자기자금요건’이라는 요건이 정해져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은 자기자금을 확보하라는 요건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요건’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기자금을 30%이상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용자제도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용자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웹사이트⁵⁶⁾에서 용자제도의 일람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발행(少数私募債)

합동회사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는 자금조달은 할 수 없지만,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발행의 형태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발행(少数私募債)이란 친족, 종업원, 거래처,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49명 이하의 소수에 대하여 판매하는 ‘무담보의 보통사채’를 이용한 자금조달방법이다.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少数私募債) 관련 규정은 이하와 같다. 사채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회사법에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행하는 배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당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채권으로서 676조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상환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회사법⁵⁷⁾ 2조 23호).

사채는 성질상 이른바 제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금융상품거래법⁵⁸⁾ 2조1항5

55) 신창업용자제도에 대해서는 https://www.jfc.go.jp/n/finance/search/04_shinsogyo_m.html 참조.

56)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웹사이트 <https://www.jfc.go.jp/n/finance/search/index.html>

57) 회사법(会社法) 조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7AC0000000086

58)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 조문

호, 2항 전단), '사채권'이라는 권면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법 2조1항5호에 따라, '사채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상품거래법 2조2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1항 유가증권)에 해당되게 된다.

소수투자자 대상 사채(少数人数私募債)(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2호^나)의 요건은 ① 다수자 대상 권유(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원수 조건) ② 적격기관투자자 대상 권유(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2호^아) 또는 특정투자자 대상 취득권유(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2호^나)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해당 사채가 그 취득자로부터 다수의 자에게 양도될 염려가 적은 것으로서 정령(시행령 1조의7제3호, 정의부령(금융상품거래법 2조에 규정하는 정의에 관한 내각부령) 13조3항1호)에서 정하는 경우의 3가지이다(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2호^나, 시행령 1조의6제2호).

요건 ①의 인원수 요건의 원칙은 취득권유의 상대방 인원수가 49명 이하라는 것이다(시행령 1조의5). 취득권유 상대방의 인원수란 권유의 대상이 된 인원수를 말하며, 실제로 사채를 취득한 인원수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관한 인원수 요건의 원칙에는 3가지의 예외가 있다.

- a. 사채에 일반투자자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법정의 전매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권유의 상대방인 전문투자자는 49명 이하라고 하는 인원수에 계상되지 않는다(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1호 괄호, 시행령 1조의4제3항). 따라서 전문투자자 100명, 일반투자자 49명 합계 149명을 상대로 하는 권유도 인정된다.
- b. 특정투자자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원수의 상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1호 뒷부분의 괄호). 그리고 전술한 a.의 예외와 비교한 경우에 특정투자자 49명, 일반투자자 1명, 합계 50명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본 b.의 예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c. 취득권유를 분할하여 1회 당 권유인원수를 49명 이하로 함으로써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발행 공시규제 회피를 도모하지 않도록 사채가 발행되는 날 이전의

과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채와 ‘동일한 종류’의 사채에 대해서 다른 소수대상 사채발행(少数人数私募)이 있었던 경우에, 과거의 권유 상대방 인원수와 이번 인원수를 합산하여 49명 이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금융상품거래법 2조3항2호八, 시행령 1조의6. ‘6개월 통산’ 요건). 이때 ‘동일한 종류’에 대해서는 정의부령 10조의2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으며, 사채의 경우에는 상환기관 및 이율이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정의부령 10조의2제1항3호, 1호イ 및ロ).

요건 ③은 유가증권의 종류마다 규정되어 있는데, 사채에 대해서 다수의 자에게 양도될 염려가 적은 경우란 해당 사채와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이 특정투자자 대상 유가증권이 아니며, 이하의 a, b, c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a. 해당 사채권에 전매제한의 기재
- b. 해당사채의 취득자에게 교부되는 서면에 전매제한이 기재되어 있을 것
- c. 해당 사채가 권유상대방 인원수의 6개월 통산한 것이 대상이 되는 동종의 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49매 이하일 것 및 해당사채에 기재된 단위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해당 사채에 기재될 것

이처럼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채발행(少数人数私募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취득권유의 상대방이 49명 이하일 것, 사채의 발행총액이 사채 1구좌 당 액면의 50배 미만일 것 등이 조건이다. 한편, 이사회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금이나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용자 등에 비하여 절차적인 면에서 용이하므로 검토해볼 만한 제도이다.

사채의 발행절차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① 권유대상자 총수는 49명 이하일 것이 필요

- 친족을 중심으로 종업원, 거래처, 지인 등 연고자 등이 응모

② 조달규모 예시

- 사채액면 10만 엔으로 하여 사채총액 490만 엔, 기간 2~3년의 자금조달 (운전자금)
- 사채액면 100만 엔으로 하여 사채총액 4,900만 엔, 기간 5년 이상의 자금조달 (설비자금)

다만, 사채총액 1억 엔 이상이 되면 고지의무가 있다. (금융상품거래법 23조의13 제4항·5항,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내각부령 14조의15)

③ 금리설정

예금금리보다 높고 금융기관의 융자금리보다 낮은 것이 이상적인 수준이며, 주로 연 1회 후불의 형태가 이용된다고 한다.

④ 상환

장래의 사채상환에 대비하여 감채기금(減債基金: 변제위한 자금)의 적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일 안에 일괄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연장을 위한 사채발행도 검토된다.

⑤ 주식회사와 다른 서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발행결의를 하므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하지만, 합동회사에서는 결정서(決定書)가 필요하다.

(4) 소결

종합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합동회사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자금조달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할 수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지원금이나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는 본래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에 비하여 손쉬운 편이다. 그리고 소수사모채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합동회사제도

의 이용을 확대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 일본의 합동회사 자금조달 관련 제도 이용현황

1.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용자를 통한 자금조달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는 정부가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하나로서 일본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민간금융기관의 용자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용자를 하며, 현재 정책금융공고가 용자해 주는 기업은 약 87만 개사에 이를 정도로 용자규모가 신용금고나 시중은행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다. 특히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용자가 기본이고 도쿄도 내의 평균용자액은 약 1000만 엔에 달하기에 이용하지 않는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⁵⁹⁾

2.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1) 소인수 사모채 제도의 의의

대기업은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 은행으로부터의 용자 등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소인수 사모채(少数私募債)’제도이다. 소수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사모채 제도는 중소기업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⁶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사채(소인수 사모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

59) 税理士を使って政策金融公庫から1,000万円資金調達する方法에 대해서는 <https://kiwami-tax.com/special/establish/earn-10million/>

60) 小企業でも社債が発行できる少数私募債の活用 (sikinguri_04.pdf) 2頁.

조금 제도를 둔 곳이 있어서 보다 유용함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지불하는 이자를 보조받는 제도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산업지원 등 관련부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채 보조금의 내용도 자치단체마다 다르며, 보조금제도가 있는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보조금 지급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⁶¹⁾

(2) 사채 제도의 활용 사례

비록 참고한 것이 2013년도의 자료이고 소인수사모채의 활용만을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4.66%에 해당하는 18,951개사가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규모 기업의 하나인 합동회사도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채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중소기업들은 비교적 경영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⁶²⁾

3. 기타 자금조달 방법

(1) 자기자본금 증가(증자)의 이용

법률적으로는 합동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은 없으므로 자본금 1엔이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법인계좌의 개설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구법상의 유한회사 정도(300만 엔)를 출자할 것을 권유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⁶³⁾

합동회사의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하의 3가지이다.⁶⁴⁾

61) 위의 자료(주 60) 3-4頁.

62) 林幸治, “中小企業の資金調達構造と社債利用”, 帝国データバンク, 2013, 6頁(trading12.pdf).

63) 합동회사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https://www.totoumi.net/sihonkin.html>

64) 합동회사의 자본금 증가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asakusa-shihou.jp/category/1950085.html>

즉, 1) 사원이 출자한 경우 ①새로운 출자에 의해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는 경우 (회사법 604조 3항)와 ②기존사원의 출자가액의 증가, 2) 회사가 사원에 대해 출자의 이행을 하도록 청구할 권리에 관한 채권을 자산으로서 계상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3) 회사가 자본잉여금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의 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1) 사원이 출자한 경우

① 새로운 출자에 의해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 의해 새로운 출자를 할 새로운 사원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을 한 때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새로이 사원이 되는 자가 정관변경 시에 출자에 관한 불입이나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자는 그 불입이나 급부를 완료한 때에 사원이 된다. 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합동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그 출자에 의해 불입 또는 급부된 재산의 액의 범위 내에서 합동회사가 계상하기로 정한 액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② 기존사원의 출자가액의 증가

총사원의 동의(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에 의해 기존 사원의 출자 가액을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그 기존사원이 증가분의 출자에 관한 불입 또는 급부를 완료한 때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상기 ①과 마찬가지로 합동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그 출자에 의해 불입 또는 급부된 재산의 액의 범위 내에서 합동회사가 계상하기로 정한 액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2) 회사가 사원에 대해 출자의 이행을 하도록 청구할 권리에 관한 채권을 자산으로서 계상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퇴사함으로써 합자회사에서 합동회사로 종류변경이 의제된 경우 등에 발생하는 사원의 출자가액 중에서 이행하지 않은(未履行)부분에 대해서 출자이행청구권을 자산계상 함으로써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 형식은 특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일치에 의해 그 출자이행청구권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으로서 계상할 액을 결정한다. 자산계상에 관한 출자이행청구권의 가액은 정관에서 정한 가액이 기준이 된다.

3) 회사가 자본잉여금의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의 액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의 일치에 의해 언제든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Crowd Funding(P2P Lending)의 활용

다음과 같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

1) 라이트이어 합동회사(<https://right-ear.com/entrance/>)는 2014년 10월 3일 5.2mm 두께의 평면스피커 유닛인 「Pillowspeaker PS-21」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제품화하고 발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동 제품의 생산을 위해 목표금액을 500,000엔으로 하여 7월 14일을 기한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을 모집한 결과 총액 1,285,000엔의 조달에 성공하여 생산을 개시하였다고 한다.⁶⁵⁾

2) 솔리드소닉 합동회사(<http://www.solidsonic.jp/>)는 2017년에 크라우드펀딩을

65) 마이ナビ뉴스,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資金調達したピロースピーカーが製品化に成功”, 2014.10.3. <https://news.mynavi.jp/article/20141003-a472/>

실시하여 세계최초의 골전도집음기(骨伝導集音器) Vibone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개량한 Vibone Nezu를 개발하기 위해 2번째의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여 300만 엔을 목표로 2019년 3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3,156,300엔의 성과를 거두었다.⁶⁶⁾

- 3) 합동회사 리베르타재팬(<http://www.libertad-japan.jp/>)은 크라우드펀딩서비스 Makuake에서 300,000엔을 목표금액으로 하여 2019년 9월 2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는데 일찍 목표액을 달성하였다.⁶⁷⁾

VI. 맺으며

본고에서는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 유한회사제도의 개요 및 독일 유한회사제도와 일본의 (구)유한회사제도의 내용, 현행 합동회사제도의 운용현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규모 경제이익이 있는 분야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고, 시장규모가 작고 다품종 소량생산(공급)분야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으며,⁶⁸⁾ 업종 업태가 다양한 만큼 중소기업의 존재형태 또한 다종다양하여 전통적인 기업형태는 물론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질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⁶⁹⁾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의 질적 중요성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서든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⁷⁰⁾, 그 역할은 대체로 다음과

66) 兵庫県中小企業団体中央会, “新製品の開発事例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連続実施でマーケットの更なる開拓を目指す”, <https://www.chuokai.com/cloud/solidsonic.html>

67) 時事ドットコム, “国内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1,500万円の資金調達に成功した多機能アドベンチャーブランケットの第2弾「Puffy Kachula」が9月2日より国内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で日本先行販売開始”, 2019.9.4. <https://www.jiji.com/sp/article?k=000000036,000028987&g=prt>

68) 高田亮爾, “中小企業の地位・役割と政策の意義”, 流通科学大学論集一流通・経営編一第21巻第1号, 2008, 94頁.

69) 高田亮爾, 위의 논문(주 68), 96頁.

같다.⁷¹⁾ 첫째로, 중소기업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도모하면서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술혁신과 정보기술(IT)에 대응하면서 국가경제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다. 둘째로, 중소기업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민의 소비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등에 대응하면서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기여한다. 셋째로, 대기업과 관련하여 보완적 분야의 공급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대기업과의 경쟁적 분야에서 시장경쟁메커니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넷째로, 지역경제사회에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취업과 고용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지방재정과 소득수준향상에 기여한다. 다섯째, 국제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존재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이들 기업이 창업 시에 선택하는 기업의 형태로 유한회사가 활용되기 쉬울 듯하지만, 실제로 현실작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신용도와 인지도가 낮아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벽을 제도적으로 해소시켜 줄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한다면 지금까지 활용도가 낮았던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지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 유한회사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합동회사제도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일본 유한회사와 현행 한국 유한회사제도의 문제점 내지는 개선 필요사항에 비추어볼 때, 자금조달기능이 부족하던 상황이 합동회사에서는 달라진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합동회사의 운용상황을 보면, 보조금이나 지원금제도의 확충보다는 소수사모채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시장에서 외부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과거의 일본 유한회사도 사채모집이

70) 高田亮爾, 위의 논문(주 68), 100頁.

71) 이하의 내용은 高田亮爾, 위의 논문(주 68), 100~101頁 참조.

불가능하였지만, 2006년 회사법에서 모든 지분회사들의 사채 모집이 가능해졌고,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소수사모채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확충되었다는 점이 합동회사제도의 이용을 확장시키는 토대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한국 상법상 금지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사채발행금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한회사의 사채발행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자금조달기능의 개선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채발행이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채발행의 허용조항을 마련하면 되겠지만 이에 필요한 법리의 검토에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허용과 관련된 제도개선 필요성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사채발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종래의 법리를 수정하여 사채발행을 허용하는 입법의 정당성과 관련된 콘센서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입법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김태균, 『벤처企業에 適合한 會社形態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3.
- 원용수, 『프랑스 상법상 전통형 유한회사와 일인유한기업에 관한 고찰』, 법무부, 2016.
- 유주선, 「독일 유한회사법상 자본규정의 변화: 2008 개정 유한회사법을 중심으로」, 『영산법률논총』 제6권 제1호,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 정동윤, 『회사법(제7판)』, 법문사, 2001.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21판)』, 박영사, 2018.
- 황일홍, 『小規模 株式會社의 活性化를 위한 法制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7.
- 江頭憲治郎, 『株式會社·有限會社法(第4版)』, 有斐閣, 2005.
- 奥野健一ほか, 『有限會社法積義』, 巖松堂, 1941.
- 今野裕之, “ドイツ 「有限責任會社」 制度の立法過程—ドイツ帝國議會議事録および政府草案·理由書を中心として”, 成城法学 第19号, 1985.
- ジャン・クロード・アルアン(Jean-Claude Hallouin)(亀井克之訳), “フランスにおける一人有
限會社(La SARL unipersonnelle en France)”, 関西大学法学研究所 第63回 特別研究
會 「フランスにおける小規模會社」 의 강연(2006. 9. 22. 개최).
- 高田亮爾, “中小企業の地位·役割と政策の意義”, 流通科学大学論集—流通·經營編—第21卷
第1号, 2008.
- デュッセルドルフ日本商工会議所, 「ドイツにおける現地法人(GmbH)設立の手引き」, 2016年
1月.
- ニューアキンドセンター, “【えっ!? そんな制度あるの?】 国や地方自治体がやっている
中小企業向け補助金·助成金のアレコレ”, 2016. 8. 1.
- 林幸治, “中小企業の資金調達構造と社債利用”, 帝国データバンク, 2013.
-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欧州法務事情シリーズ 第1回 ドイツ有限會社(前編)”, KPMG
Insight vol.17, 2016.
- Maximilian Gröning·小林あき, “欧州法務事情シリーズ 第1回 ドイツ有限會社(後編)”, KPMG
Insight vol.18, 2016.

■ Abstract

A Review of ways to revitaliz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Kang, Young Ki*

This paper summarizes the overview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 contents of the German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the old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Japan,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the Japanese LLC, called Godokaisya company system. It is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ways to ease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ng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issuing bonds. The reason why the Korean government became interested in financing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ems to be to restore the vit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by fostering SMEs and venture companies that will use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the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 think it is a system tha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an use effectively. Indeed, in Germany,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s the most successful operation, the LLC in the United States is actively used, and also the Japanese LLC, called Godokaisya, is also increasingly used. However, in Korea, the utilization rat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s low. There are various reasons, but a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lack of smooth financing functions seems to b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use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system in Korea, because the social credibility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s too low compared to those of stock compan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expand the financing function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alleviate the issuance of bonds by limited companies, which are prohibit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Just because bonds can be issued is expected to change a lot in improving the financing function. Of course, in order to allow debentures to be issued, in principle, provisions for permitting debentures should be made, but it will take some time to review the necessary legal logic.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justify the basis for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s need to issue bonds. If it is possible to evoke an imminent situation that requires the issuance of bonds, a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Financial Law Center.

consensus on legislative necessity to allow the issue of bonds will be made even if the existing laws are ignored and modified, And I think it can be solved through legislation that naturally allows it.

- **Key Words** Consensus, corporate subsidies, Debentures for a few investors, Features of limited liability, Japanese LLC, Prohibition of Bond Issue, Revitalization of financing, Simplicity, A small amount of capital
-